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0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 산 업 과

목 차

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1

➥ 시행령 별표 ····· 21

➥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 29

[고시]

Ⅱ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 37

➥ 별표/별지서식 ····· 45

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법률 제13030호, 2015.1.20., 제정](시행 2016.1.21.)
- **시행령**[대통령령 제26904호, 2016.1.19., 제정](시행 2016.1.21.)
-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 2016.1.21., 제정](시행 2016.1.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1.] [법률 제13030호, 2015.1.20., 제정]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6904호, 2016.1.19., 제정]	[시행 2016.1.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 2016.1.2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차나무의 잎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차산업"이란 차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차를 생산, 가공, 조리, 포장, 보관,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제2조(차의 종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녹차(차나무의 잎을 덖거나 쪄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홍차(차나무의 잎을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도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조한 차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 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3. 차의 가공·제조·유통·판매 현황 4.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5. 차의 수출입 현황 6.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7. 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4. 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5. 교육훈련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공공기관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비영리법인 6.「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산업 또는 차문화와 관련된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경영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의 대상은 차를 재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차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3.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차 경작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2. 차 경작지의 농로 정비 3. 차 경작지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4. 그 밖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장이 정한다.	
제14조(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와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육성, 차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세계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문화의 홍보 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차문화의 홍보에 관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제16조(차문화의 계승 · 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차문화의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차문화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국내외 차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의 개최 및 참가 사업 3. 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용 차 및 차 관련 제품 등을 가공·제조하는 사업 4. 그 밖에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 · 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홍보전시관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홍보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전시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체험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발굴과 우수성 홍보 사업 2. 차의 제조방법 교육·전수 사업 3. 차문화의 교육·전수 사업 4. 차와 한식을 연계한 사업 5. 그 밖에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홍보, 차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과 관련된 사업	
제19조(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 등의 표시를 한 차의 품질수준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열람하게 하거나 차를 수거하여 전문시험 연구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시험의뢰 결과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표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변경 등의 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 칙** **제20조(자료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종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22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경비의 지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시험의뢰 및 표시 변경 등 명령 4.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며,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2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3030호, 2015.1.20.>	**부 칙** <제26904호, 2016.1.19.>	**부 칙** <제194호, 2016.1.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별표 1]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강의실: 면적[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사. 교육장비: 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교육과정: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

가. 차 재배 관련 교육과정

나. 차 생산 관련 교육과정

다. 차 가공 관련 교육과정

라. 다례 또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

마. 그 밖에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의 보급·전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 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최소 2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4.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목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교육 관련 업무나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별표 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가. 강의실: 면적[내벽 간 바닥 면적을 실측(實測)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사. 교육장비: 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교육과정: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

가. 차산업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나. 차산업 업체 취업 희망자 교육과정

다. 차산업 종사자 보수교육과정

라. 차산업 경영 교육과정

마. 차 마케팅 교육과정

바. 차산업 관련 법규 교육과정

사. 차의 품질향상, 개발 및 위생 관련 교육과정

아. 차 생산·가공·제조·유통 및 차해설 관련 강사 양성 교육과정

자. 차 소믈리에 양성 교육과정

차. 차문화 교육 강사 양성 교육과정

카. 그 밖에 차의 세계화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 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연 96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4.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별표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 제4항제4호	경고	지정 취소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300	500	1,000
나.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100	300	50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별표 1]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1. 적용범위: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른 종류 및 기준

가. 표시종류: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

나. 표시종류별 기준

1) 우전: 해당 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穀雨)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2) 곡우: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3) 세작: 절기상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4) 중작: 5월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5) 대작: 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사용한 것

다. 나목의 표시종류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곡우(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2)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세작(첫물차 또는 1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세작(두물차 또는 2번차)', 5월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중작(두물차 또는 2번차)'로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차나무 잎 채취시기: 해당 제품의 차나무 잎 채취시기를 "년 월 (상, 중, 하)순"으로 표시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나무 잎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채취된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차나무 잎 채취지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나무 잎을 채취한 시·군·구명을 표시하되, 여러 시·군·구에서 채취한 차나무 잎을 혼합하여 차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시·도명 표시나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별표 2]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제품 생산에 있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명령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명령기준에 따른다.

나. 표시변경 명령은 2주일 이내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표시 변경을 이행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료 기준일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표시변경 등 명령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경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날과 경고를 받은 날 이후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품을 생산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표시변경 등 명령기준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 위반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경고	표시변경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 현저하게 위반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표시변경	

3. 현저하게 위반된 경우의 기준

가. 차나무 잎의 종류에 따른 표시종류별 기준에 있어 "세작"을 "우전"으로 표시하거나, "대작"을 "세작"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 2단계 이상의 기준을 상향하여 표시한 경우

나. 차나무 잎 채취시기를 5월에 채취한 것을 4월에 채취한 것으로 표시하는 등 1개월 이상 앞의 시기에 채취된 것으로 표시하는 경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차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적 합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교육훈련 분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 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력양성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연구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적 합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인력양성 분야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고 시

Ⅱ.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시행 2016.7.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25호, 2016.7.1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의 장을 말한다.
2. "사무소장"이란 농관원 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지원장 등"이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
4. "교육훈련기관"이란「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지정 심사반"이란 교육훈련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표시조사"란 제9조의 조사공무원이「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등(이하'차의 품질 등의 표시'라 한다)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을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처분 등"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을 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변경 신청·심사)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명
3. 소재지
4. 교육훈련 분야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1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변경 신청 · 심사)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명
3.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분야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영 별표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

제5조(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횟수 및 시기) ① 농관원장은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시기는 지정기관의 수와 지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점검반의 편성)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점검 항목) 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2. 지정기준 적합 여부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
4. 교육훈련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점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2. 지정기준 적합 여부
3. 전문인력 양성과정 또는 내용의 적정 여부
4.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1년 이상 계속 실시 여부

제5장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제8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 계획) 농관원장은 매년 표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공무원의 임명)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표시조사 공무원(이하"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10조(조사반의 편성 및 운영) 농관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대상 품목) 표시조사 대상품목은 규칙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이하"표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표시한 차(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조사대상자) 표시조사대상자는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 차의 생산자(차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차의 생산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표시조사) 조사원이 표시조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보관창고·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기준의 적정 여부
2. 표시조사를 위한 관련 장부·서류
3. 표시조사와 관련된 제품

제14조(증표제시) 제13조에 따른 표시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나타내는 신분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 등의 명령(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한다)를 징구하고 규칙 별표 2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농관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5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보고사항) 지원장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처리 후 7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 농관원장은 조사원의 직무역량향상을 위하여 표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9조(권한의 재위임) ① 농관원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
2.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6.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② 농관원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
2.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과태료 부과 요구
4.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제품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5.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부 칙 <제2016-25호, 2016.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표/별지서식

[별표 1]

시정명령 절차(제15조 제2항 관련)

1. 조사원은 차의 생산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6하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서(이하“시정명령서”라 한다)를 발부하여 시정명령(경고 또는 표시변경 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다.

2. 시정명령서는 적발현장에서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자에게 발부하고 나머지 1부는 지원장 등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발부하되 우편 또는 인편(직접 전달)으로 전달할 수 있다.

3. 조사원은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그 기간을 위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지원장 등에게 보고한다.

4. 시정명령서에는 위반자의 상호・주소・성명, 처분의 제목・개요(위반품목・위반내용・시정유형・시정기간), 법적근거 등을 기재하고, 시정명령(표시변경 명령에 한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5. 위반자가 확인서 및 시정명령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명기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제16조 제2항 관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가. 조사원은 차의 생산자가 시정명령(표시변경 명령에 한한다)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열람 또는 제품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6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필요시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나. 위반자가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명기한다.

다. 조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이하“의견진술안내서”라 한다)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라. 의견진술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20일” 의 기산점은 의견진술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마. 조사원이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 ○ 의견진술안내서
- ○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관련 증거서류를 근거로 영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3. 과태료 부과 통지

가. 농관원 담당부서는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과태료 징수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과태료 징수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통지서(이하 “과태료 부과통지서”라 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유지 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적발경위 등에 관한 관계서류(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부과통지서, 납입고지서, 이의신청서, 의견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적 합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80g/㎡)]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부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적 합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신청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80 g/㎡)]

확 인 서

업체	상 호		허가(신고·등록) 번 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부과 처분에 한하여 기재한다)		
	주 소			전화번호	

위 업체의 업주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업주와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백상지(80 g/㎡)]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시 정 명 령 서

업체	상 호		허가(신고·등록) 번 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처분 제목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개요	위반품목				
	위반내용				
	시정유형				
	시정기간				
비 고	위 시정명령(표시변경 명령에 한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전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또는 ○○사무소장) 직인

수령자	주소				업주와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조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작성 요령 >

* 발부번호 :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시) 2016-001호**
* 위반품목 :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 위반내용 : 규칙 별표 1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위반내용을 기재한다
* 시정유형 : 규칙 별표 2의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의 개별기준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별 표시변경 등 명령기준(경고 또는 표시변경)을 기재한다
* 시정기간 : 즉시 또는 기간을 기재한다

210㎜×297㎜[백상지(80g/㎡)]

◎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 있음(　　), 없음(　　)

☞ 자진납부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과(☎　　)　　(앞 쪽)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

상　　호 :

대표자 성명 :

귀하는「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금액이 (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전화(각 지원 전화번호)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전화번호

※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최저 10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차등부과 됩니다.

210㎜×297㎜[백상지(80 g/㎡)]

(뒤 쪽)

※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전화(휴대폰)번호 :
◦ 이의신청 내용(별지 작성 가능)

※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시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가 있습니다.
- 감경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향응제공,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
◦ 전화(FAX)번호 : 054-429-4122 (FAX : 054-429-4128)
◦ 인터넷 : www.naqs.go.kr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과태료 부과통지서

제 호

1. 업체(상호)명 :

2. 소 재 지 :

3. 주 소 :

4. 대 표 자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5.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조사기관	위반행위	위반내용

6. 부과내역: 과태료 원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직인

210㎜×297㎜[백상지(80 g/㎡)]

(뒤 쪽)

<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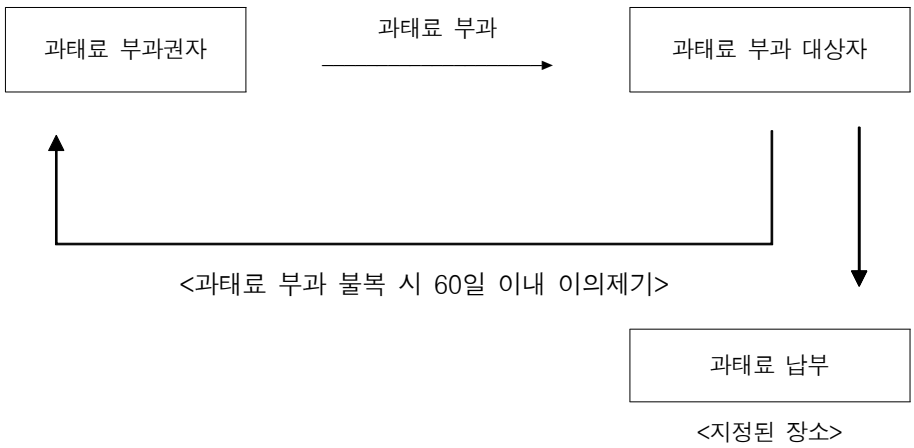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위반내용	위 반 일 시		위 반 행 위	
	위 반 내 용			
과 태 료 부과내역	납 부 기 한		납입고지서 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 태 료 금 액	
이의신청 사 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부서류 : 1. 과태료 부과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 g/㎡)]